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허용 기준 강화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71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허용 기준 강화(안 제25조제10항)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12. 6.

다. 회 부 일: 2024. 12.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 Ⅲ. 검토의견

#### 1.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허용 기준 강화(안 제25조제10항)

##### 가. 개정안 요지

-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기준을 ‘10년’으로 강화함(안  
제25조제10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생략)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
|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u>5년</u> 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⑩ -----<br>----- <u>10년</u><br>-----<br>-----<br>-----<br>-----<br>-----<br>-----<br>-----<br>-----<br>-----. |

|                              |                                    |
|------------------------------|------------------------------------|
| 1. ~ 7. (생 략)<br>⑪ · ⑫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br>⑪ · ⑫ (현행과 같음)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제1항부터 제4항1)),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보상금(이른바 ‘교육 목적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6항2)).
- 저작재산권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sup>3)</sup>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제7항4)) 위 보상금은

- 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2)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현재 ‘교육목적 보상금’ 및 ‘도서관 보상금’은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실연자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반제작자 보상금’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지정되어 있음.
- 4)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각 지정단체들이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후 ‘보상금 분배 공고’를 실시하는바, 공고 후 5년<sup>5)</sup>이 지날 때까지 저작재산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미분배 보상금’은 해당 단체가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등을 비롯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0항6).

- 이는 권리자 확인 및 소재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금이 상당 부분 분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계속 보관하도록 하거나 공탁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보다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 위 ‘교육목적 보상금’ 관련 규정은 ‘도서관 보상금’(제31조),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제75조·제82조)·디지털 음성송신사업자(제76조·제83조)·공연자(제76조의2·제83조의2) 보상금’ 등에 대해서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5) 위 기간은 당초 「저작권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8년 해당 기간이 너무 짧은 이유 등에서 5년으로 개정된 바 있음.

6)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 보상금 제도 종류 및 현황 ]

| 보상금 종류              |             | 저작권법 근거 | 징수 개시년도                          | 보상금 수령단체                         | 납부대상         | 연간 징수액 ('23기준) |
|---------------------|-------------|---------|----------------------------------|----------------------------------|--------------|----------------|
|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 교과용 도서 보상금  | 제25조제1항 | 2008년                            | 한국문학<br>예술저작권<br>협회<br>(舊 복전협)   | 출판사          | 약 55억원         |
|                     | 수업목적 보상금    | 제25조제3항 | 2014년<br>(대학)<br>2023년<br>(교육기관) |                                  | 대학,<br>교육기관  | 약 31억원         |
|                     |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 제25조제4항 | 2016년                            |                                  | 교육부,<br>교육청  | 약 15억원         |
| 도서관 보상금             |             | 제31조제6항 | 2004년                            |                                  | 도서관          | 약 86백만원        |
| 실연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 방송보상금       | 제75조    | 2002년                            | 한국음악<br>실연자연협회                   | 방송사          | 약 62억원         |
|                     |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 제76조    | 2008년                            |                                  | 디음송<br>사업자   | 약 6억원          |
|                     | 공연보상금       | 제76조의2  | 2010년                            |                                  | 백화점,<br>호텔 등 | 약 20억원         |
| 음반제작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 방송보상금       | 제82조    | 2002년                            | 한국연예<br>제작자협회<br>(‘20년까지<br>음산협) | 방송사          | 약 77억원         |
|                     |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 제83조    | 2008년                            |                                  | 디음송<br>사업자   | 약 35억원         |
|                     | 공연보상금       | 제83조의2  | 2010년                            |                                  | 백화점,<br>호텔 등 | 약 24억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 기간인 5년만을 경과하면 지정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지정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sup>7)</sup>

- 실제 미분배보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미분배 상태인 보상금이 총 233억 6,100만원에 이르는 상황임.

7) 전자신문, “문저협, 미분배 저작권료 100억원 넘었다…“분배 노력 부족””, 2024. 10. 15. 등

## [미분배 보상금 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 단체명         | 보상금 종류<br>(징수개시년도) | 누적<br>징수액 <sup>1</sup> | 누적<br>분배액 <sup>2</sup> | 미분배금 (A+B)        |                                    |                    |                   |                 | 공익목적<br>사용금액 |
|-------------|--------------------|------------------------|------------------------|-------------------|------------------------------------|--------------------|-------------------|-----------------|--------------|
|             |                    |                        |                        |                   | <A><br>분배중 <sup>3</sup><br>(5년 미만) | <B><br>5년이상<br>미분배 | 5년 ~<br>10년<br>미만 | 10년<br>이상       |              |
| 문<br>저<br>협 | 교과용도서<br>(1999)    | 69,551                 | 50,670<br>(72.9%)      | 18,881<br>(27.1%) | 11,191<br>(16.1%)                  | 7,690<br>(11.1%)   | 5,803<br>(8.3%)   | 1,887<br>(2.7%) | 15,698       |
|             | 도서관<br>(2004)      | 569                    | 112<br>(19.7%)         | 457<br>(80.3%)    | 197<br>(34.6%)                     | 260<br>(45.7%)     | 83<br>(14.6%)     | 1,77<br>(31.1%) | -            |
|             | 수업목적<br>(2014)     | 29,811                 | 21,887<br>(73.4%)      | 7,924<br>(26.6%)  | 5,662<br>(19.0%)                   | 2,262<br>(7.6%)    | 2,262<br>(7.6%)   | 0<br>(0.0%)     | -            |
|             | 수업지원목적<br>(2016)   | 11,770                 | 8,295<br>(70.5%)       | 3,475<br>(29.5%)  | 3,200<br>(27.2%)                   | 275<br>(2.3%)      | 275<br>(2.3%)     | 0<br>(0.0%)     | -            |
|             | 소 계                | 111,701                | 80,964<br>(72.5%)      | 30,737<br>(27.5%) | 20,250<br>(18.1%)                  | 10,487<br>(9.4%)   | 8,423<br>(7.5%)   | 2,064<br>(1.8%) | 15,698       |
| 음<br>실<br>련 | 방송<br>(1988)       | 101,397                | 81,940<br>(80.8%)      | 19,457<br>(19.2%) | 16,517<br>(16.3%)                  | 2,940<br>(2.9%)    | 2,737<br>(2.7%)   | 203<br>(0.2%)   | 8,482        |
|             | 디음송<br>(2008)      | 9,143                  | 6,911<br>(75.6%)       | 2,232<br>(24.4%)  | 2,016<br>(22.1%)                   | 216<br>(2.4%)      | 199<br>(2.2%)     | 17<br>(0.2%)    | 386          |
|             | 공연<br>(2010)       | 18,813                 | 13,690<br>(72.8%)      | 5,123<br>(27.2%)  | 3,536<br>(18.8%)                   | 1,587<br>(8.4%)    | 1,450<br>(7.7%)   | 137<br>(0.7%)   | 1,362        |
|             | 소 계                | 129,353                | 102,541<br>(79.3%)     | 26,812<br>(20.7%) | 22,069<br>(17.0%)                  | 4,743<br>(3.7%)    | 4,386<br>(3.4%)   | 357<br>(0.3%)   | 10,230       |
| 연<br>제<br>협 | 방송<br>(1988)       | 82,864                 | 70,427<br>(85.0%)      | 12,437<br>(15.0%) | 7,209<br>(8.7%)                    | 5,228<br>(6.3%)    | 4,946<br>(6.0%)   | 282<br>(0.3%)   | 1,212        |
|             | 디음송<br>(2008)      | 30,145                 | 25,245<br>(83.7%)      | 4,900<br>(16.3%)  | 3,435<br>(11.4%)                   | 1,465<br>(4.9%)    | 1,254<br>(4.2%)   | 211<br>(0.7%)   | 405          |
|             | 공연<br>(2010)       | 14,216                 | 11,465<br>(80.6%)      | 2,751<br>(19.4%)  | 1,313<br>(9.2%)                    | 1,438<br>(10.1%)   | 1,294<br>(9.1%)   | 144<br>(1.0%)   | 260          |
|             | 소 계                | 127,225                | 107,137<br>(84.2%)     | 20,088<br>(15.8%) | 11,957<br>(9.4%)                   | 8,131<br>(6.4%)    | 7,494<br>(5.9%)   | 637<br>(0.5%)   | 1,877        |

1. 누적 징수액 = 징수액+이자
2. 누적 분배액 = 권리자 실 분배액 + 관리 수수료 + 공익목적 사용금액
3.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분배공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 연도를 구분하지 않는 미분배금 이자 포함
4. 공익목적 사용금액은 사용액 총액(단, '23 사업은 승인액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개정안은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기준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민법」 8)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아직 저작재산권자의 보상금 수령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를 10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임.<sup>9)</sup>

- 나아가 다른 경우와 달리 현행법 제50조<sup>10)</sup>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에만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 
- 8)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9) 박성호, “저작권법상 수업목적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금의 분배”,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 10)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저작권법」  
체계상 완결성 도모 및 형평성 등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타당  
한 측면이 있다고 봄.

-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정안은 보상권리자가 자신의 보상금 할당  
분을 회수할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자 권리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미분배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  
효 기간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이 적절하고, 현행법 제50조의 법정허락을 위한 보상금 규정과  
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전부 수용의  
견을 제출하였으며, 교육부 또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376 |